

#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

(의안번호 제811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7. 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7. 1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7. 1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무위원회 수정안 상정 · 의결

### 2. 제정이유

-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질높은 보건·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노소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탁노소 설치·운영 및 설치 우선지역(안 제2조, 제6조)
- 시설 설치구조, 설비기준설정(안 제4조)
- 탁노소운영에 따른 임무한계 설정(안 제5조)
- 탁노소 설치·운영 지원협의회 구성·운영근거 마련(안 제8조)
- 수익자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(안 제9조)
-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제시 등(안 제11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수 없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, 맞벌이 부부 부양노인 등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질높은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노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

- 상위법령과 상급기관의 공문 지시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사회복지과장, 수정안대로 의결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?
- 답 : 예, 없습니다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3. 7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